#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가입·탈퇴규정

전부개정

2024. 09. 0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정관 제6조,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 따라 회원단체의 가입, 탈퇴 등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가입"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(이하 "체육회"라 한다.) 이사회 또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체육회의 회원단체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탈퇴"는 회원단체가 회원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등급"은 체육회 정관 제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회원단체의 구분을 말한다.
- 4. "승격"은 준회원 단체가 정회원단체로 등급이 조정되거나, 인정단체가 준회원단체로 등급
- 5. "강등"은 정회원단체가 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로 등급이 조정되거나 준회원단체가 인정단체로 등급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.
- 6. "제명"은 체육회가 회원단체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.
- 7. "올림픽대회 종목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"은 가입 및 등급 심의 당시에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 채택된 종목을 말한다.
- **제3조(가입요건)** ①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 - 1. 세종특별자치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단체일 것
  - 2. 종목이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

- 3. 세종특별자치시를 총괄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
- 4. 5개 이상의 동호인조직이 회원종목단체에 가입되어 있을 것
- 5.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
- 6.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
- 7. 체육회의 정관 및 '회원종목단체 운영규정'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
- 8. 국제올림픽위원회(IOC)가 인정하는 국제경기연맹(IF)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(OCA)가 인정하는 아시아경기연맹(AF),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된 종목단체일 것. 다만, 종목 또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②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하는 종목단체의 최초 등급은 인정단체가 된다.
- ③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, 전국종합체육 대회 종목은 동호인조직 수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준회원단체로 가입 할 수 있다.
- ④ 체육회는 가입 심의대상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도 회원종목단체 가입 필요 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가입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- 제4조(가입 심의절차 등)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제경기연맹 또는 아시아경기연맹이 존재하지 않는 종목단체는 제1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.
  - 1. 가입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  - 2. 단체 소개서(연혁, 종목설명, 활동개요, 조직 등)
  - 3. 임원 명단(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)
  - 4. 단체의 정관 및 모든 규정
  - 5.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
- 6.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

- 7. 선수 및 동호인, 팀(스포츠클럽 포함) 등록 현황
- 8. 읍·면·동종목단체 및 산하연맹체 설치 현황
- 9.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
- 10.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
- 11. 전년도 예 · 결산서 및 해당년도 예산서
- 12. 해당 단체의 국제경기연맹(IF) 및 아시아경기연맹(AF), 대한체육회 회원종 목단체 가입 관련 서류
-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매 회계연도 9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, 체육회는 당해연도 12월까지 심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등에 국가대표 선수 파견 및 훈련을 위한 경우 에는 심의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③ 가입·등급심의위원회는 가입요건, 체육회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하며, 가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관 제10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.
- **제5조(등급심의)** ① 체육회는 정회원단체, 준회원단체, 인정단체의 등급에 관한 사항을 매년 심의한다. 다만, 당해연도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는 예외로 한다.
- ②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등급심의를 위해 회원종목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.
  - 1. 회원종목단체 요구: 회원종목단체 운영규정에 명시된 회원종목단체 의무사항, 동호회 운영현황, 선수등록 현황, 대회개최·출전현황
  - 2. 기타 체육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요건
- 제6조(승격) ①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는 해당 등급 승인 일부터 만 3년이 경 과하면 승격 심의 대상이 된다. 다만, 인정단체가 제3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 만

-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승격 대상이 된다.
- ② 회원종목단체가 승격을 위해서는 제3조제1항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.
  - 1. 인정단체가 준회원단체로 승격할 경우: 5개 이상 동호인 조직 이상.
  - 2. 준회원단체가 정회원단체로 승격할 경우: 7개 이상 동호인 조직 이상. 다만,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,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은 동호인 조직 수에 관한 요 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③ 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종목단체는 승격 대상에서 제외한다.
  - 1. 회원종목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한 경우
  - 3. 관리단체 해제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- ④ 제1항에 따른 승격 희망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승격 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
  - 2. 임원 명단
  - 3. 단체의 규약 및 규정
  - 4. 선수 및 동호인, 팀(스포츠클럽 포함) 등록 현황
  - 5. 읍면동체육회에 가입한 종목단체 현황
  - 6. 전국 대회 및 시장기·협회장기·체육회장기 대회 개최, 대회 입상 실적
  - 7. 회원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대회 현황(연 1회 이상)
- ⑤ 가입·등급심의위원회는 승격요건, 체육회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심의하여야 하며, 승격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 - 1. 준회원단체로의 승격: 이사회의 의결
- 2. 정회원단체로의 승격: 총회 의결

- **제7조(강등 및 제명)**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단체 에 대해서는 정관 제10조의 2에 따라 강등 또는 제명 할 수 있다.
  - 1. 회원의 가입요건 또는 승격요건을 상실한 경우
  - 2. 정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
  - 3. 임원 간의 분쟁, 재정악화,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회원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
  - 4. 회원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스포츠비리 행위 등으로 사회 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한 경우
  - 5. 국회, 감사원, 문화체육관광부, 세종특별자치시 등 외부 감사와 체육회의 감사의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② 가입·등급심의위원회는 강등 또는 제명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, 강등 또는 제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관 제10조 2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.
  - 1.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
  - 2. 강등 또는 제명 시 문제점
  - 3. 개선 가능성
  - 4. 제1항 제5호에 따른 처분 조치 이행 가능여부
- ③ 체육회 정관 제9조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제명한다.
- **제8조(탈퇴)** ① 회원단체가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탈퇴한다.

- ② 회원단체가 해산한 경우 체육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.
- 제9조(가입·등급심의위원회) ① 체육회는 가입, 승격, 강등, 제명 등의 심의를 위하여 가입·등급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제4조에 따른 회원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
  - 2.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승격, 강등 및 제명에 관한 사항
  - 3. 기타 체육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
-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.
  - 1.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및 해당 분야와 관련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회장이 위촉하되, 체육회 사무처장과 체육진흥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  - 2.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며 위원 7명 이상 9명으로 한다.
  - 3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다.
- 제10조(읍·면·동체육회의 가입과 등급) ①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읍·면·동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가입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
- 2. 단체 소개서(지역소개, 조직현황 등)
- 3. 임원 명단(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)
- 4. 읍·면·동 종목단체 설치현황
- 5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
- 6. 회원가입을 의결한 총회 회의록
- ② 체육회 정관 제6조에 따라 읍·면·동체육회는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본다.

- ③ 읍·면·동체육회는 등급심의를 제외한다.
- **제11조(규정의 개정)** 이 규정을 개정할 때 국가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주무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읍·면·동체육회 규정의 적용) ① 읍·면·동체육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 체의 읍·면·동종목단체에 한정하여 가입·탈퇴규정의 가입요건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## 부 칙(2024. 09. 0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[별지 제1호 서식]

접 수 일		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					
접수번호		회원종목단체 가입신청서					
	① 단체명			② °	년 <b>락</b> 처		
신청인	③ 주 소						
(대표자)	④ 성명(한자)			(5) A	생년월일		
	⑥ 현 주소						
⑦ 설립 연월일							
⑧ 설립목적							
⑨ 회원 및 지회 현황		회원수			지회수		
⑩ 국 제 연 맹 / 아 시 아 연 맹 / 중앙종목단체와의 관계		명칭			회원가입 여부		

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정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 치시체육회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인

###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귀하

#### 붙임서류

- 2. 임원 명단(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)
- 3. 단체 정관(규약) 및 모든 규정
- 4.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
- 5. 읍·면·동 종목단체 설치 현황
- 6. 선수 및 팀(스포츠클럽 포함) 등록 현황 체육회에 가맹된 중앙경기단체 참고자료

- 1. 단체 소개서연혁, 종목설명, 활동개요, 조직 등 8. 전년도 수입·지출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입·지출예산서
  - 9.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
  - 10.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및 참가실적
  - 11. 당해 단체의 국제 및 아시아 경기연맹, 대한
- 7.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12. 기타(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입상현황 등)

#### [별지 제2호 서식]

접 수 일		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						
접수번호		읍·면·동체육회 가입신청서						
신청인 (대표자)	① 단체명			② 연락>	처			
	③ 주 소							
	④ 성명(한자)	⑤ 생년월일						
	⑥ 사무국 주소							
⑦ 설립 연월일(총회일)								
⑧ 설립목적								
⑨ 회원현황		종목 단체	총 개 (정회원 0개, 준 인정단체 0	회원 0개, 개)	리·통	개		
⑩ 단체현황		임원 구성	총 명 (회장 1명, 부회 이사 명, 감시	장 명, <b>-</b> 명)	사무국 직 원	총 명 (정규직 명, 계약직 명)		

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정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ဂ္]

###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귀하

#### 붙임서류

- 1. 단체 소개서(지역소개, 조직현황 등)
- 2. 임원 명단(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)
- 3. 단체의 정관(규약) 및 모든 규정
- 4. 읍・면・동 종목단체 설치 현황
- 5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
- 6.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

#### [별지 제3호 서식]

접수일		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						
접수번호		승격신청서						
<b>신청인</b> (대표자)	①단체명			②연락처				
	③주소							
④설립일								
⑤ 승격 필요성 (500자 내)								
⑥ 승격요건	구분		검토 결과 *해당하지 않을 경우 "해당없음"으로 표기					
		체에 가입되어 있는 인 조직의 수	개 동호인 조직					
	아시아/국	<sup></sup> '제연맹과의 관계	명칭: 가입여부:					
	현 등급	승인 후 3년 경과	등 급: 승인일:					
	가입한 아시	아 및 국제연맹 명칭	아시아: 국제:					
이이 가지 계조트버키키기케이치 차이즈모다케 스커이 시켜차니다								

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승격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 인

##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귀하

붙임서류

- 1. 임원 명단
- 2. 단체의 규약 및 규정
- 3. 선수 및 동호인, 팀(스포츠클럽 포함) 등록 현황
- 4. 읍·면·동체육회에 가입한 읍·면·동종목단체 현황
- 5. 전국 대회 및 시장기·협회장기·체육회장기 및 대회 입상 실적
- 6. 회원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대회 현황(연 1회 이상)